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현황 등의 국회보고 의무화〉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35호)

2024. 8.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등 수립시 국회보고 의무화	3
2.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 등에 대한 국회보고 의무화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임종득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2024. 6. 5.
3. 회 부 일: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및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은 해외 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법무부장관이 매년 2차례 연방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감시 및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국회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계획과 해외 유출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등 수립시 국회보고 의무화

-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①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종합계획에는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세계 시장에서 국내 방위산업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유럽 국가 및 미국 등과의 경쟁과 견제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종합계획 등의 작성 및 시행에 대한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부 정책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한편, 동 개정안이 발의(2024.6.5.)된 후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3항에서는 ‘방산기술보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종합계획 등 제출 시기와 관련하여 현행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개정안에서는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여 그 범위에서는 개정 논의의 실익이 있으며 타당한 것으로 보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단계별 목표와 추진방안
3. 방위산업기술의 보호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시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

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 1. 16.>

⑤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 16.>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16.>

③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 1. 16.>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 16.>

□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¹⁾에서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은 시행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수립하도록 하여 그 시한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지체 없이’ 문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종합계획 등의 수립 기한을 정하고 있을 뿐 국회 보고 시기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법률에서 그 보고 시기를 명확히 하여 개정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방위산업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2.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 등에 대한 국회보고 의무화

-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발생한 제10조²⁾에 따른 유출 및 침해 행위의 현황 등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8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① (생략)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발생한 제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 행위의 현황과 이 법에 따라 취한 정부의 조치 등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현행법 제21조에서는 방위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내 유출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지만,³⁾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

- 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3.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 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벌칙) 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0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도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그리고 「국회법」 제128조⁴⁾ 등에 따라 국회의 자료 요구시 방위
사업청은 해당 의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유출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보고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방위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감시 및 통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미국의 경우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및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은 해외에서 발생한
영업비밀의 절취 현황을 법무부장관이 매년 2차례 연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⁵⁾

⑥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4)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⑥ 제1항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국회도서관, 최창수·박진애·강명원·심소연(2023),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통권 제224호)

[미국 영업비밀 절취 현황의 연방의회 보고 제도]

- 미국 「영업비밀보호강화법」(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에 따라 관련 규정이 제정되어 미국연방법전 제34편 제41310조에 편제되어 있고, 그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미국은 해외에서 발생한 영업비밀의 절취 현황을 연방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은 매년 2차례 지적재산집행조정관, 지적재산담당 상무부차관, 미국특허청장 및 기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영업비밀 절취에 관한 보고서를 상원 및 하원 법사위원회(Judiciary Committee)에 제출해야 함.
 - 또한 법무부 웹사이트나 다른 방식을 통해 이러한 보고서를 일반대중에게 공개 및 배포해야 함.
- 현황보고서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미국기업 영업비밀 절취의 규모와 빈도, 해외에서 발생한 영업비밀 절취 사례 중 외국의 정부·기관·대리인이 지원한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해외에서 발생한 미국기업 영업비밀 절취의 위협 및 이로 인해 야기된 경제적 피해를 감축하는 조치 등을 포함하여, 입법부와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해야 함.

□ 이에 개정안은 현행 국회 보고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외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국회가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⁶⁾

6) 다만, 동 조문의 체계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5조에서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8조의2 규정을 신설하기보다는 현행법 제5조에서 규율하는 것이 보다 간명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해외유출·침해 행위 현황 및 정부 조치에는 관련 대상의 민감정보·경영상의 비밀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고, 방위산업기술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 사안별로 대면 설명하는 현행 방식이 보다 적절하다는 입장임.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현황 등에 대한 보고 방식 비교]

구 분	현 재	개 정 안
보고 방법	대면 설명	정기적 국회(상임위) 보고
정보 범위	일반적인 통계 및 후속조치 등 * 유출행위 등에 대한 자료는 수사 및 업체의 민감정보로 제공 불가	해외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조치 등
설명 시기	요구 시 수시 보고	매년 정기적 보고

*자료: 방위사업청

문 의 처
02)6788-5312